



제399회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 기준 구체화 >

■ 태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145호)

2022. 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                       |   |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                 |   |
|-----------------|---|
| III. 검토의견 ..... | 3 |
|-----------------|---|

|                               |   |
|-------------------------------|---|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기준 구체화 ..... | 3 |
|-------------------------------|---|

|              |    |
|--------------|----|
| ※ 참고자료 ..... | 10 |
|--------------|----|

|                       |    |
|-----------------------|----|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 10 |
|-----------------------|----|

## I. 제안경위

2022년 4월 7일 태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범위, 약식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실시 여부 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대표’의 정의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움. 또한, 주민대표가 적절히 구성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되거나 의견 공유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체를 주민대표로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당시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 III. 검토의견

#### 1.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 기준 구체화

현행법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원의 총 수를 10명 내외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 중 1인 이상 포함되는 주민대표의 의미를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제6항과 조례에 따라 동과 리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것임(안 제8조 등).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생략)<br>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현행과 같음)<br>②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16조, 제27조, 제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 |

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 계획수립기관의 장 또는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제4호의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제6항과 조례에 따라 동(행정동을 포함한다)과 리(행정리를 포함한다)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학식과 경

③ (생 략)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 ④ (생 략)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환경  
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

협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나.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  
간전문가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  
문가  
라.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  
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  
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  
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  
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  
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추천  
하는 소속 공무원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4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장-----  
-----  
-----  
-----

|                                 |                  |
|---------------------------------|------------------|
|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br>고려하여야 한다. | -----<br>-----.  |
| 1. ~ 6.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
| ⑥ ~ ⑧ (생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8조<sup>1)</sup>는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로 하여금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sup>2)</sup>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sup>3)</sup>은 현행법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1)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립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7조 및 제

하고 있는 ‘주민대표’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구체화하여 1인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 총 수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기만 하면 주민대표로서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위촉된 주민대표가 계획 또는 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적정하게 대표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환경영향평가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sup>4)</sup>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

---

44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이하 “협의기관”이라 한다)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2.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3의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4.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1명 이상
  - 4의2.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협의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5.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 가.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 다. 보건 등 건강영향평가 전문가(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해양 관련 전문가[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에 「연안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沿岸陸域)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생략)

4) “태영호 /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주민대표를 명확히 정의한다”, 2022.4.12., 환경신문  
“태영호 “GTX 강남 지나지만 협의회에 강남구 못 들어가”, 2021.4.9., 아시아경제

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협의회 구성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는 주민대표의 의미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에서 ‘「지방자치법」<sup>5)</sup>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5항·6항과 조례에 따라 동과 리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위원의 총 수를 ‘10명 내외’에서 ‘20명 이내’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즉,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대표의 위촉 기준을 행정과 주민들의 사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며, 위원 총 수의 상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 및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통장·이장 등의 참여로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여 협의회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

---

5)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③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리에는 반을 둔다.

제5조(통장·이장·반장의 임명) ① 통·리·반에는 통장·이장·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이장·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안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통장과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sup>6)</sup>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sup>7)</sup>

둘째, 현행법은 협의회 위원 총 수를 ‘1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외”는 ‘약간 덜하거나 넘음’<sup>8)</sup>을 의미하여 수치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위원 총 수의 상한을 20명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협의회 위원 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사례<sup>9)</sup>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37 |

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사업위치(면형)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남구 일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일원  
- 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연다산동, 동패동 일원

7) 한국환경연구원 의견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9)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31명으로 구성됨.

## ※ 참고자료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제4조

#### □ 기능

- 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효율성 제고  
※ (평가협의절차) 평가준비서(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 → 평가서 초안작성(주민의견 수렴) →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 요청 → 협의 → 협의내용이행

#### □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구성주체)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 (심의사항) 평가항목·범위 결정,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거짓·부실 작성여부 판단, 그 밖에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협의회 위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10인 내외
- (협의회 운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전문위원회

- (구성주체)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 (구성근거) 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 (심의사항) 평가서 거짓·부실여부
- (위원구성) 5급이상 공무원, 5년이상 재직한 관·검사 또는 변호사, 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관련 협회,단체,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10인 내외
- (협의회 운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자료 : 환경부